

#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3
----------	-----

제출연월일 : 2011.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2005년 4월 13일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관련 상위법령의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매점·자동판매기 계약체결자의 직접운영을 의무화하고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변동사항 반영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안 제1조)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안 제4조)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 반영
  - 매점·자동판매기 계약체결자의 직접운영 의무화 (안 제6조)
  -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안 제7조)
- 인용조례 제명 띄어쓰기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다. 관계부서협의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2011. 11. 10 ~ 11. 30(20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를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평창군에 거주하는 20세이상”을 “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공시설”을 “공공시설내”로, “설치허가 신청서식”을 “설치 허가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이상일”을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으로, “언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할 때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단, 제1항제5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중 “방법에 관하여는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며”를 “방법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본문 중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를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제4조에 따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이하 “군” 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범위) ①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p>	<p><u>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u></p> <p>제1조(목적) ----- ----- 제42조에 따라 ----- ----- ----- ----- ----- ----- ----- ----- -----.</p> <p>제2조(적용 범위) ① ----- ----- -----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따른다. ----- -----.</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사전공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1개월 전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조(사전공고) ----- ----- ----- 제2조에 따 른 ----- ----- ----- -----.</p>
<p>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평창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 ----- 제32조에 따라 ----- ----- 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 각 호 ----- ----- -----.</p>
<p>1.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식(별지 제1호 서식)</p> <p>2.·3. (생략)</p> <p>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p>	<p>1. 공공시설내 ----- --- 설치 허가 신청서 ----- -----</p> <p>2.·3. (현행과 같음)</p> <p>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 -----</p>
<p>제5조(우선계약 등) ① 시설관리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p>	<p>제5조(우선계약 등) ① ----- - 제4조에 따른 ----- -----</p>

현행	개정안
<p>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 ----- ----- ----- .</p>
<p>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시설관리자가 결정한다.</p>	<p>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 각 호----- ----- ----- ----- .</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 ~ 4. (생략)</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2. ~ 4. (현행과 같음)</p>
<p>제6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u>정신지체·발달장애인은</u>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6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 받아야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계약의 해지) 시설관리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p>	<p>제7조(계약의 해지) ①----- ----- 각 호의 어느 하</p>

현 행	개 정 안
<p>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시설관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양수하였을 때</p> <p>4.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8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며,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하여 허가할 수 있다.</p>	<p>나----- -----.</p> <p>1. · 2.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4. (현행과 같음)</p> <p>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할 때</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단, 제1항제5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 ----- ----- 방법은 「평창군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 -----.</p>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담당 정 성 문
연락처	(033) 330 - 2341

# 관 련 법 령

## □ 장애인복지법

###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2조 (생업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제1급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제2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

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8.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9.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10.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제5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9.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0.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1.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

## 가 있는 사람

###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경추와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 2. 뇌병변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파행(跛行)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제6급 보행 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 3.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제2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3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 제4급

1. 두 귀의 청력을 각각 7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5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제6급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제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멈추어야 하는 사람

제5급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 5. 언어장애인

제3급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 지적장애인

제1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

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7. 자폐성장애인

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 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정신장애인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 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 의욕 ·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증상기(症狀期)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제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제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

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9. 신장장애인

제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5급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인

제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자기 신체 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5급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1. 호흡기장애인

제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제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 이동 할 때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제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

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정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제5급 폐를 이식받은 사람

## 12. 간장애인

제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이 있거나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 병력이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제3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제5급 간을 이식받은 사람

## 13.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5급

1.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14.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 제2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제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제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진 사람
3.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으면서,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어서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여야 하거나 장세척을 하여야 하는 사람

4.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5급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15. 간질장애인

가. 성인 간질

제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 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 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영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 기능의 장애 등으로 영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간질

제2급 전신발작, 간질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등으로 심각한 영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전신발작, 간질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영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전신발작, 간질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3)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

함께이를 꿈! 2018 동계올림픽



평 창 군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 권고

1. 기획감사실-4414(2011.06.10)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바로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있으며,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의거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해당부서에서는 개선방안을 조치기한 내 적극 반영하고, 조치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평창군 대상조례 1부.  
2. 개선안 1부.

기 획 감 사 실 장

수신자 주민생활지원실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경제과장

주무관 **용지혜**

감사담당 **76용담**

기획감사실장 **박태연**

전결 08/26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6781 (2011.08.26.) 접수 주민생활지원실-33836 (2011.08.26.)  
우 232-700 강원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하리210-2) 평창군청 / http://www.happy700.or.kr  
3층  
전화 330-2219 전송 033-330-2594 / wjaew@korea.kr / 공개

## 1 공유재산 수탁자 선정시 경쟁체계 강화

### □ 수탁자 선정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

-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12조)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현행	개선안
제2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생활체육관련단체 및 지역 동호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회관의 운영을 경기단체 또는 체육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공개경쟁에 의해 위탁하여 운영하게할 수 있다.

## 2 공공시설 청사 및 매점·자판기 운영자 선정 투명화

### □ 공공시설 청사

- 공유재산 무상임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및 사용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장치 마련
    - 위원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
    - 법률자문, 용역수행 등에 관여한 경우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현행	개선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회의 구성)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li> <li>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li> <li>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li> <li>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li> <li>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③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p>⑤ 위원 본인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li> <li>2. 삭제&lt;2008.10.17&gt;</li> <li>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li> <li>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li> <li>2. 삭제&lt;2008.10.17&gt;</li> <li>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li> <li>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li> <li>5.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li> <li>6.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li> </ol>

□ 공공시설 매점·자판기

○ 매점·자판기 계약체결 자의 직접운영 강화

○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불법으로 설치허가를 받고 계약을 한 자는 바로 계약을 해지
- 일정 기간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제재규정 마련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현행	개선안
제6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사업을 <u>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u> 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현행	개선안
제7조(계약의 해지) 시설관리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이 사망한 때 3. 시설관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양수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시설관리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이 사망한 때 <u>3. 삭제</u>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할 때  
②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단, 제1항 제5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지역축제 지원의 투명성 확보

#### □ 보조금 지원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여 수익계약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특혜요인 차단

####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현행	개선안
(신설)	제○○조(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보조금 집행내역 및 평가 결과 공개

- 보조금 집행내역 및 결과보고서, 평가결과 등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의무화
- 공개된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예산 및 지원규모에 반영

####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현행	개선안
(신설)	제○○조(보조사업의 실적 등 공개)군

수는 보조사업 완료 시 정산결과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평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 축제행사 사전심의 강화

- 축제 관련 평가 용역시 축제사업 집행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축제사업자의 평가용역 발주 금지
- 지역축제의 충실한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요건 및 심의·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
- 전년도 축제행사의 사후평가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의 심의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
  - ※ 평가항목 예시(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참조)
    - 당해연도 평가결과
    - 지역축제의 경제적 성과
    - 방문객 만족도 등

## □ 보조금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 기부금품모집법, 지방계약법 등 법령 및 자치법규,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등 문제 발견시 평가에서 감점하여 보조 지원 규모 결정에 반영
-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 반복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제외(예시)
    - 법령 또는 보조조건 위반 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때

## 【평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평창군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평창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축제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1. 실장급(과장급) 관계 공무원 2명
2. 관광·문화·예술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장
3. 축제 및 관광관련 교수
4. 관광·문화·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조정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5.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한 때
- 3.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한다.

**제11조(재정관리)**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등 법령에 의하지 않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 12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항목에 의해 평가하되 현지조사는 평가소위원회 또는 군수가 발주한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의 평가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 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에서 보고한 평가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 14조(정보공개)** 군수는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서와 축제결과보고서(평가서 포함)를 군청 홈페이지에 약 6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 15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반복될 때에는 차기년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 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축제 평가항목**

관 점	차 원	대 분 류	배 점
성과관점	가. 문화행사의 영향력 및 성과	1. 사회적 영향	5
		2. 문화적 영향	5
		3. 예술적 영향	5
		4. 환경적 영향	5
	나. 경제적 성과	1. 경제적 파급효과	10
		2. 관광 효과	5
방문객 관점	다. 방문객 만족도	1.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내용	5
		2. 행사구성	5
		3. 편의시설 운영 및 진행	5
		4. 행사장 환경	5
내부프로세스 관점	라. 문화행사 기획	1. 기획주체	5
		2. 기획내용	5
	마. 문화행사 예산	1. 자체재원 비율	5
		2. 예산항목 구성비	5
	바. 문화행사 조직	1. 축제조직의 구성도	5
		2. 축제조직의 효율성	5
	사. 문화행사홍보	1. 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	5
	아. 지역주민 참여	1. 지역주민참여 및 협조수준	10
합계			100

※ 법령, 조례 및 규칙,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 건수당 3점씩 감점.